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

(채유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08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채유미, 김수규, 최 선,
김 경, 전병주, 조상호,
장인홍, 여 명, 최기찬,
황인구, 권순선, 양민규,
장상기 의원 (13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학생의 건강증진 및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위하여 보건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,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~ 제3조).
- 나.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다.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라. 위원회의 설치,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~ 제9조).
- 마. 보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.

바. 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학교보건법, 학교보건법 시행령
- 초·중등교육법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학교보건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생“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.
2. “보건교육“이란 「학교보건법」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, 음주·흡연과 약물 오·남용의 예방, 성교육, 정신건강,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학생 건강의 보호·증진과 건강 인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“이라 한다)은 학생의 건강 증진 및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교사는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학교보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4조(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)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보건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
2. 보건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
3.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대책 및 추진방향
4.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
5.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
6.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)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보건교육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.

②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 및 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.

제6조(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보건교육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.

1.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·시행
2. 유관단체와의 연계·소통 등에 관한 사항
3.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은 남녀 성별의 균형을 맞추어 어느 한 쪽 성의 인원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.

1. 교육청 보건교육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
2. 각급 학교에 재직 중인 보건교사
3.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8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보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)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, 연수운영, 자료개발, 평가 연구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.

제11조(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·운영)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6조(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), 제9조(위원회의 운영 등), 제10조(보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), 제11조(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·운영)에 따라 비용 발생
- ※ 단, 같은 조례안 제11조(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·운영)에 따른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아님([붙임] 참고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≙ 880,265천원(연평균 176,053천원)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76,053천원임
- 추계의 전제
 -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는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이며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 및 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, 비용추계 제외
 - 보건교육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는 15명으로 구성하되,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을 포함하고, 13명은 외부위원으로 가정함
 - 위원회의 운영은 연 2회 개최를 가정(정기회 2회 기준)
 - 보건교육센터 비용은 이와 유사한 보건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인 ‘학교흡연예방지원센터 운영’ 사업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
- ※ 보건교육 진흥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기 설치·운영 중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이 있으나, 본 추계에서는 안제10조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내에 보건교육센터를 설치·운영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

▶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은 교원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관련 교육연수연구운영, 건강증진 지원사업 총괄, 학교보건사업 계획 수립, 학생 정신건강 관련 업무 총괄, 감염병 관리 및 보건교육 업무 총괄, 학생건강증진 연계서비스 업무 총괄, 각종 감사, 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, 학교 보건 관련 유관기관 협력 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
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- 비용은 2020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○ 총 비용(합계) ≙ 880,265천원(연평균 176,053천원)

- 위원회 설치·운영비 + 보건교육센터 설치·운영비

(단위 : 천원)

연도 구분	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합 계
세입	○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안제6조 및 제9조 위원회 설치·운영비	5,320	5,320	5,320	5,320	5,320	26,600
	안제10조 보건교육센터 설치 운영비	170,733	170,733	170,733	170,733	170,733	853,665
소계(b)		176,053	176,053	176,053	176,053	176,053	880,265
□ 총 비용(b-a)		176,053	176,053	176,053	176,053	176,053	880,265

○ 위원회 설치·운영 비용 ≙ 26,600천원

- 산출방식 $\sum_{i=1}^5 (\text{연간위원회설치·운영비용})_i = 26,600\text{천원}$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0~2024년)

- 연간 위원회 설치·운영 비용 =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+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+
연간 민간위원 여비

= 3,900천원 + 900천원 + 520천원

= 5,320천원

·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= 구성원 수 × 1인당 회의참석 수당 × 1년간 회의개최 횟수

= 13명 × 150,000원 × 2회

= 3,900천원

※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(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)에 따른 기본료 10만원, 2시간 초과 비용 5만원 등 총15만원 기준

※ 참석수당 지급대상은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

제1항에 따라 공무원 2명을 제외한 13명 지급 전제

-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= 전체 위원 수 ×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× 1년간 회의개최 횟수
= 15명 × 30,000원 × 2회
= 900천원

※1인당 업무추진경비 단가는 「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」에 따라 3만원으로 가정

- 연간 민간위원 여비 = 전체 민간위원 수 × 1인당 국내여비 단가 × 1년간 회의개최 횟수
= 13명 × 20,000원 × 2회
= 520천원

※1인당 국내여비 단가는 「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」에 따라 2만원으로 가정

○ 보건교육센터 설치·운영비 ≍ 853,665천원

- 산출방식 $\sum_{i=1}^5$ (연간보건교육센터설치운영비)_i = 170,733천원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0~2024년)

- 2019년 '학교흡연예방지원센터 운영' 예산 준용
 - 구성 : 전문 인력 6명
 - 내용 : 학교 흡연예방사업 지원(심화형 실천학교 지원,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보급), 서울시교육청 흡연예방 특화사업 운영 및 지원 등
 - 소요예산 : 170,733천원

자료 :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분 석 관 원동아

☎ 02-2180-7953

e-mail : dongya1@seoul.go.kr

【붙임】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

(단위:천원)

구분	세부사업명 (세세부사업명)	2019년 예산	사업내용
제11조(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 운영)	학생건강안전관리역량강화 (학생건강및안전사업)	35,07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건강증진학교 거점학교운영 - 학교의 “학생건강증진계획”에 따른 건강증진학교 운영 · 소요예산 : 35,075천원

자료: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